

중구 서울형 다산보건지소 운영을 위한 주민 참여 활성화 기반 구축 사업 협약서 (안)

서울특별시 중구보건소(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두루두루배움터(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중구의 서울형 다산보건지소 운영을 위한 지역주민 참여 활성화 기반 구축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중구 서울형 다산보건지소 운영 관련 지역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발주기관”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계약상대자”를 선정하고,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권리의무 등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기간) 협약기간은 2015년 8월 17일부터 2016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업비) 본 사업 비용은 **금19,910,000원(금일천구백구십일만원)**으로 정한다.

제4조(사업대상) 본 사업의 대상은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동 주민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사업내용)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사업 전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고 수행한다.

1. 주민 건강위원회 구성, 건강리더 양성 등 주민 조직화 사업
2. 지역건강현황 및 주민 요구도 조사 등 건강조사와 건강지도 제작 사업
3. 건강리더, 지역주민 및 직원 교육 등 역량강화 사업
4. 지연사회·주민·관공서 간의 거버넌스 구축
5. 기타 서울형 다산보건지소 운영을 위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제6조(“계약상대자”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제반 여건 및 기타 이해관계 등을 이유로 사무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협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협약 체결 후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수탁 받은 업무를 다른 제 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

⑤ “계약상대자”는 업무상 취득한 비밀사항을 제 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⑥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처리 제한 사항을 준수하고,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개인정보 열람·정정 등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보조) 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소요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② “발주기관”은 사업비를 50%씩 2회에 나누어 지원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예산지원에 대해 사업계획에 의거 용도에 맞게 투명하게 집행 및 정산을 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사업비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원장을 비치하고 총괄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사항을 기록 관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제8조(사업비 정산) “계약상대자”는 협약기간 및 사업기간 만료시 만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게 보고해야하며, 집행잔액은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결과보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사업기간 만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결과에 관한 최종보고서 500부를 제출(원본파일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① “발주기관”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를 지도 감독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업무담당자가 관계서류 열

람, 현장확인, 관련자료 제출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제2항의 조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협약의 해지) ① “발주기관” 또는 “계약상대자”는 이 협약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 예정일 30일전에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발주기관”에게 공익상 위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③ “발주기관”은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협약의 해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계약상대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본 협약이 해지될 경우 해지일까지의 사업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고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12조(불가항력) 전쟁, 화재, 홍수, 지진, 태풍 등의 풍토병, 전염병, 정치 분쟁, 정부규제 등 불가항력의 원인으로 인한 본 협약의 시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쌍방 어느 측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된 손실일수는 본 협약 기간에서 제외된다.

제13조(기타)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용역 계약 일반조건을 적용하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상호 이견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4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서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날인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쌍방이 각각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15년 8월 일

“발주기관” 서울시 중구보건소(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39길 16)

보건소장

홍혜정 (인)

“계약상대자” 두루두루배움터(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 68가길 20)

대표자

우성구 (인)